울산광역시 중구 한글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의 아 번 호

제안연월일: 2013. 6.

제 안 자 : 김지근 의원 외 3명

1. 제정이유

한글학자 최현배 선생의 탄생지인 중구가 한글사랑의 정신을 앞장서 되새기며 구민과 공공기관에서의 한글 사용을 촉진하여 민족문화의 보전·계승 및 발전에 이 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제정의 목적, 기본이념 및 정의(안 제1조 ~ 제3조) 나. 구청장의 책무, 추진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(안 제4조, 제5조) 다. 공문서의 작성 및 광고물 등의 한글 사용에 관한 사항(안 제6조, 제7조) 라. 실태조사,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에 관한 사항(안 제8조, 제9조) 마. 예산의 지원, 교육 및 표창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 ~ 제12조)

3. 제정조례안 : "따로붙임"

4. 근거법규

「국어기본법」, 「국어기본법 시행령」

5. 참고사항

입법예고 사항 : 2013. 6. 3. ~ 6. 7.(5일간)

울산광역시 중구 한글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한글학자 최현배 선생의 탄생지인 울산광역시 중구가 「국어기본 법」에 따라 한글사랑의 정신을 앞장서 되새기며 민족문화의 보전 계승 및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기본이념) 한글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울산광역시 중구(이하 "구"라 한다)가 한글학자 최현배 선생의 탄생지임을 깊히 인식하여 구 및 구민(구의 주민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자긍심을 갖고 한글사랑과 그 문화유산의 보전·계승 및 발 전에 앞장섬을 기본이념으로 한다.

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"한글사랑"이란 한글 사용 촉진 및 그 문화유산의 보전·계승 및 발전을 위하 여 실천에 옮기는 행위 또는 행동을 말한다.

"순우리말"이란 국어 중에서 우리민족 고유어만을 말한다.

- 3. "공문서 등"이란 구 소속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(이하 "공공기관"이라 한다)이 작성 ·제작하는 「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」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공문서 와 전자문서를 말한다.
- 제4조(책무)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구민 및 공공기관의 한 글사랑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·추진하는 등 노력해야 한다.

- ② 구민은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참여하고 적극 협력해야 한다.
- 제5조(추진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구청장은 구 및 구민의 한글사랑을 위하여 4년마다 울산광역시 중구 한글사랑 추진계획(이하 "추진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한다.
 - ② 추진계획에는 한글사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
 - 2. 구민 및 구 소속 공무원의 국어능력 증진방안 3. 공공기관의 실천방안
- 4. 정신·신체상의 장애로 언어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 및 구 거주 외국 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방안
 - 5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-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「국어기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어 발전 기본계획과 그 시행계획을 고려해야 한다.
 - ④ 구청장은 추진계획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하는 한글 국어 관련법인·단체(이하 "전문기관"이라 한다)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있다.
- 제6조(공문서 등의 작성) ① 공문서 등은 법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. 다만, 외국인 전용으로 제공되는 공문서 등은 예외로
 - 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한다.

 - 1. 일상생활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주 쓰는 우리말로 작성한다.
 2. 어려운 한자어, 일본식 한자어,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 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.
 - 3. 꼭 사용해야 할 경우 외에는 외래어의 사용을 자제한다.
 - 4.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준수한다.
 - ③ 공공기관은 공문서 등 작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- 제7조(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)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」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(이하 "광고물 등"이라 한다)에 표시하는 문자는 어문 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함께 써야 하다.
- 제8조(실태조사) ① 구청장은 공문서 등의 한글 작성 및 국어사용 실태와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실태를 2년마다 조사(이하 "실태조사"라 한다)한다.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
 - 다.
 -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다음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한
- 제9조(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) ① 구청장은 문화공보실장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
 - ② 국어책임관의 한글사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.
 - 1. 업무 총괄
 - 2. 시책의 수립과 추진
 - 3. 실태조사 업무 추진
 - 4.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임무
 - 5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
- 제10조(예산의 지원) ① 구청장은 한글사랑을 위하여 활동하는 구 소재 법인·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울산광역시중구 보조금

관리 조례 에 따른다.

- 제11조(교육) ① 구청장은 구민 또는 구 소속 공무원의 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해야 한다.
 -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국어 교육을 실시한다. 이 경우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한글사랑방 프로그램을 개설 · 운영할 수 있다.
 -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
 -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.
- 제12조(표창 등) ① 구청장은 한글 및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한글사랑에 이
 - 바지한 구민 또는 구 소속 공무원을 표창할 수 있다. ② 구청장은 구가 한글학자 최현배 선생의 탄생지임을 홍보하고 그 공적을 기리며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는 각종 한글사랑 행사를 실시한다.
 -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행사에서 서예 또는 글짓기 대회, 한글 바로알기 대회
 - 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입상자에게 표창한다. ④ 구청장은 순우리말을 사용하는 등 한글사랑에 이바지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 광고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.
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-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구청장이 한글사랑을 위하여 지원하였거나 지 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으로 본다. 제3조(적용례)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이미 작성되었거나 작성 중인 공문서 등 및 광
- 고물 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울산광역시중구 한글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3년 6월 3일 · 김지근의원 외 3명

나. 회부일자 : 2013년 6월 5일

다. 상정일자 : 제158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(의안번호 제987호)

(2013년 6월 14일 상정의결)

2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김지근 의원)

가. 제안이유

한글학자 최현배 선생의 탄생지인 중구가 한글사랑의 정신을 앞장서 되새기며 구민과 공공기관에서의 한글 사용을 촉진하여 민족문화의 보전·계승 및 발 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

나. 주요내용

- 1) 조례제정의 목적, 기본이념 및 정의(안 제1조 ~ 제3조)
- 2) 구청장의 책무, 추진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(안 제4조, 제5조)
- 3) 공문서의 작성 및 광고물 등의 한글 사용에 관한 사항(안 제6조, 제7조)
- 4) 실태조사,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에 관한 사항(안 제8조, 제9조)
- 5) 예산의 지원, 교육 및 표창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 ~ 제12조)
-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검토보고자 : 김진만 전문위원)

외래어나 한글 변형어들이 늘어가고 있는 지금 한글을 누구보다도 사랑해온 최현 배 선생님의 탄생지인 우리 중구에서 다른 고장보다 앞장서 한글사랑을 펼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은 동상설립, 생가복원 등에 이은 한글사랑 지원조례제정사항은 한글을 소중하게 여기고 보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